

質 問 室

質問: 大學設置基準令에 規定된 圖書館設置事項의 詳細과 大學圖書館育成을 爲한 文教科當局의 方針을 알려줄 것을 要望한다

答: 現우리나라 大學圖書館에 關한 唯一한 法的 根據가 되어 있는 "大學設置基準令"은 禮紀 4288年 8月 4日 大統領令 第1063號에 依하여 制定實施되고 있는데 現實施 段階에 있는 各大學圖書館의 實情에서 分하면 甚지 많은 矛盾이 나타나고 있다. 그 같은 大學圖書館關係者들이 認定하고 있는 事實이다. 이 矛盾의 實例로서 藏書數의 基準은 無價値한 冊子의 集合으로서 數를 채우는 傾向이 되어 있고 質的인 面에서는 限界가 漠然하여 規定의 困難함으로 當局에서도 이의 對策에 眞心하고 具體한 具體的인 方針이 아직 確立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問題는 大學教育의 目的과 並行하여 大學教育의 心臟인 大學圖書館發展에 重大한 問題임으로 當局에만 單인 性質의 것이 爲함으로 圖協에서는 不遑 大學圖書館部會를 召集하여 多面的인 面에서 이 問題를 討議 研究하여 具體的인 方策을 文教科當局에 建議할 方策입니다

(以下 大學設置基準令中 圖書館關係條項 抜萃)

第一條 大學(而說 大學을 包攝한다 以下 같다)의 設置에 있어서 國立, 公立, 私立을 莫論하고 다른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本令의 定하는 基準에 依하여야 한다

第八條 校舍의 基準坪數는 다음과 같다

- 一. 實驗, 實習, 實技等의 特別한 施設設備을 必要로 하지 않는 學科(一學科一專攻基準)에 있어서는 學科당 學生定員百六十名까지는 學生一人에 對하여 四坪(學科數가 二以上일 때에는 一學科以外의 各學科에 있어서는 三坪) 以上으로 하고 이를 超過할 때에는 그 超過하는 一人에 對하여 二坪以上式을 加

算한다 但 初級大學과 二年制師範大學에 있어서는 學科數에 關係 없이 學生 定員 80名까지에 學生 1人에 對하여 4坪 以上으로 하고 이를 超過할 때에는 그 超過하는 1人에 對하여 2坪 以上으로 加算한다

二、實驗 實習 實技等의 特別한 施設 設備을 必要로 하는 學科(一學科 - 專攻基準)에 있어서는 前號에 依한 坪數 以外에 學生 1人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加算하되 二 以上の 學科에서 共同使用하는 境遇에는 그 加算되는 坪數의 10% 以內로 控除할 수 있다

가. 農, 工, 醫, 獸醫, 藥, 水産, 物理, 化學, 生物, 地質, 天文, 氣象, 家政等의 自然科學系 學科(醫豫科를 包含한다)에 있어서는

三坪 以上

나. 體育, 藝術 其他 이에 準하는 學科에 있어서는 二坪 以上

다. 商, 數, 地理, 歷史 其他 이에 準하는 學科에 있어서는 一坪 以上

第十一條 大學에는 學生 1人에 對하여 三十卷 以上の 圖書을 備置하되, 一學科當 五千卷 以上이 되어야 한다 但 初級大學(醫豫科를 包含한다)과 二年制師範에 있어서는 各其 三分之二로 한다

校舍에는 教室, 事務室, 教員室, 研究室, 圖書館(室) 以外에 講堂, 會議室, 映畵設備等과 醫務室, 食堂等 學生의 保健厚生을 爲한 設備을 하여야 한다

附 則

第一條 本令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第二條 本令 施行當時의 大學으로서 本令의 各基準(以下 各基準이라 한다)에 該當하지 않는 學校는 本令 公布日부터 다음과 같은 擴充 措置를 하여야 한다

一、 第八條 第一號과 同條 第二號(나)(다)에 該當하는 各學科에

있어서는

一年以内에 各基準의 40% 以上

二年以内에 各基準의 60% 以上

三年以内에 各基準의 80% 以上

四年以内에 各基準의 90% 以上

五年以内에 各基準의 100%

二 第八條第二號(才)에 該當하는 各學科에 있어서는 一年以内에 各基準의 30% (附屬施設은 20%) 以上 二年以内에 各基準의 50% (附屬施設은 40%) 以上 三年以内에 各基準의 70% (附屬施設은 60%) 以上 四年以内에 各基準의 80% 以上 五年以内에 各基準의 90% 以上 六年以内에 各基準의 100% 前項의 年度別 擴充措置를 그대다 所定대로 履行하지 아니한 大學에 對하여는 文敎部長官은 學校의 閉鎖 學科의 統合 學生定員의 裁縮等의 措置를 命한다 (以下省略) (以上 條文 4289年 12月 興文社에서 發刊한 現行學事法規集에서 拔萃記載하였음)

質問: 우리나라의 圖書館員의 身分에 關한 職制條項의 辭明과 이에 對한 圖協의 對策을 알려주기 바란다.

答: 現行法規上으로는 「國立圖書館職制」(4282年 5月 6日 大統領令 第 97號) 와 「國立學校設置令」(4286年 4月 20日 大統領令 第 780號) 에 司書官(三級甲類, 書記官 該當 및 三級乙類, 事務官 該當) 과 司書(四級主事 該當) 에 關한 規定이 있고 此外에 「教育區와 市教育委員會에 配置하는 公務員에 關한件」(4287年 3月 20日 大統領令 第 880號) 에 司書官(서울 特別市에 限함) 및 司書規定이 있을뿐 地方公務員 또는 私立學校 其他機關에 屬하는 圖書館人의 身分에 關해서는 何等의 法的 根據가 없습니다

이 問題은 韓國圖書館界에 있어서 緊急하고도 重大한 問題임으로 圖協은 이의 法的 根據이 될 圖書館法制定을 積極推進中에

있으며 省面問題로는 于先 前記大統領令 第 880 号中 司書官을 서울 特別市에 限한것을 地方市에도 들수있도록 修正할것을 文敎部에 建議하였든바 今月內로 法制處에 回附될 段階에 있으며 이의 實現에 最善을 다할것입니다.

地方自治團體에 屬하는 圖書館員을 爲하여는 內務部에 司書 및 司書官職制設定을 折衝中에 있습니다.

「司書資格考試會」에 關한 問題는 그 性質上 慎重을 期하여야 하겠으나 于先 最善을 다하여 圖書館專門職의 資格을 保障함으로서 全國各級圖書館의 職員採用基準을 確立할 方針입니다.

「敎育區와 市敎育委員會에 配置하는 公務員에 關한件」中 關係條項： 第二條 市敎育委員會에 敎育監外에 다음의 公務員을 들수있다

- | | | |
|---|---|---|
| 獎 | 學 | 官 |
| 事 | 務 | 官 |
| 獎 | 學 | 士 |
| 主 | | 事 |
| 技 | | 士 |
| 司 | | 書 |
| 書 | | 記 |
| 技 | | 員 |

修正案： 第二條中 事務官 다음에 司書官을 新設한다.

質問：本校는 男子高等學校로서 學校圖書館을 新設하려고 하는데 設置方法과 運營方法에 關한 參考資料나 可能하면 實際的인 方法을 敎示할 可수 없는가?

答：아직 胎動期에 있는 우리나라 學校圖書館의 育成發展에 對한 行政當局의 具體的인 方案이 無으므로 貴校와 共히 學校圖書館의 新設에 對하여 매우 困難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圖協에서는 各專問各科委員會가 構成되어 公共, 大學, 特殊, 學校圖書館等의 專題的인 研究를 하고 있으므로 圖書館新設과 運營 改編에 對하여 언제든지 相談 및 直接訪謁하여 指導를 하고 있읍니다
그 故로 貴校圖書館新設에도 理論的인 敎示에 만 끝일것이 많기나 學校圖書館關係의 專問家를 訪校케 할 計劃이 오나 그리 諒察하시기를 바랍니다

質問：今年度圖書館實務講習會計劃을 알려 주기 바랍니다

答：圖協主催의 秋期講習會는 十月中에 開催할 予定이 있으나 講師의 欠의 全員이 延世大學校圖書館學校에 關係하여 出席이 不可能함으로 不得已 時期를 變更하여 冬期放學期를 利用하여 實施하게 되었는데 從來의 講習會가 여러가지 事情으로 時間과 努力에 比해서 所得이 적었다는 點에 鑑하여 今後는 過去의 諸缺典을 是正하여 보다 效果的인 講習會가 되도록 研究하고 있읍니다

普通會員募集

圖協은 本月報 發刊을 契期로하여 (普通會員)을 募集하고 있아오니 希望하시는 方은 申請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會員에게는 本月報 및 앞으로 刊行될 圖協機關誌를 繼續 贈呈하여 드립니다

會員資格 圖書館, 圖書室, 學校 其他讀書施設에 勤務하는者